**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9호**

## <2026년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26년 1월 05일

산업통상부장관

# 2026년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 1. 포상개요

○ 엔지니어링의 날(6.5)을 맞이하여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엔지니어링 산업계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포상 실시

## 2. 포상종류 및 규모 : 총 00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25년 포상규모 : 41점(산업훈장 2, 산업포장 1,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7, 청장표창 2)

## 3. 포상신청 및 추천대상

○ **(개인포상)**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협회.조합.대학.연구원 등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 **(단체포상)**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단체

## 4. 추천제 운영

○ 포상추천제는 포상대상자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으로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천자는 추천자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관련단체 및 법인의 부서장과 개인 등 모두 가능

## 5. 대상자 심사.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

## 6. 공개검증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후보자(장관표창 제외) 명단, 주요 공적내용 등을 소통24(구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

## 7.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26. 2. 06(금)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관 5층 경영지원팀

○ **제출방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경영지원팀)로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작성한 서식은 날인 후 우편 송부 및 전자우편으로 한글파일양식(hwp) 및 원본 스캔본(pdf파일)을 제출

※ 전자우편 : sanghun@kenca.or.kr, 전화 : 02-3019-3223

- 국민포상추천에 따라 일반국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와 전자우편(sanghun114@korea.kr)을 통해 제출

## 8. 기타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기준, 추천제한 사항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2026년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포상 추진계획」 참조

# 2026년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포상 추진계획

2026. 1.

산 업 통 상 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 1

1. 추진목적 ····· 1
2. 기본방향 ····· 1

Ⅱ. 포상개요 및 추천 ····· 2

1. 포상시기 및 장소 ····· 2
2. 포상종류 및 규모 ····· 2
3. 포상후보자 추천 ····· 2

Ⅲ. 포상 및 표창기준 ····· 3

1. 포상 및 표창기준 ····· 3
2. 수공기간 ····· 3
3. 재포상 금지기간 ····· 3
4.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4
5. 추천제한 ····· 4
6. 추천제 운영 ····· 8
7. 훈격 결정 ····· 8
8. 포상방법 ····· 8
9. 포상후보자 추천절차 ····· 8

Ⅳ. 행정사항 ····· 10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10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10
3. 제출 방법 ····· 11
4.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11

≪붙임서식 1≫ 공적조서 / 16
≪붙임서식 2≫ 공적요약서 / 20
≪붙임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22
≪붙임서식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24
≪붙임서식 5≫ 이력서 / 26
≪붙임서식 6≫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28
≪참고자료≫ (엔)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및 표창 심사지표(안) / 29

#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 1. 추진목적

○ 2026 엔지니어링의 날(6.5)을 맞이하여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엔지니어링 산업계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정부포상의 기본방향

○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포상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등

-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및 산업경제의 활력에 기여한 유공자
- 고부가가치영역의 시장창출, 빅데이터.AI 등을 바탕으로 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통한 엔지니어링산업의 4차 산업 기술 융합 및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 해외 신시장 개척,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전문인력 역량강화, 법률제도의 선진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유공자

○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 **사회공헌 기여** 촉진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유관기관 등 단체 포상기회 확대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 또는 **괄목할 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포상 후보자의 공개 검증, 공적심사 강화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 고취

# Ⅱ. 포상개요 및 추천

## 1. 포상시기 및 장소

○ 일시 : 2026. 6월 중, 11:00(미정)

* “2026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 예정

○ 장소 : 서울 드래곤 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서울 용산구)

## 2. 포상종류 및 규모

○ 포상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청장표창

○ 포상규모 : 00명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3. 포상후보자 추천

### 가. 추천기관

○ 엔지니어링산업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유관단체 또는 개인

* 유관단체 : 엔지니어링산업분야 유관단체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국가엔지니어링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 나. 추천기간

○ 포상추천 공고일로부터 **2026. 2. 6(금)까지** 접수분에 한함

### 다. 추천대상(개인 또는 단체)

○ 단체표창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협회.조합.대학.연구원 등 유관기관

○ 개인표창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일반국민

# Ⅲ. 포상 및 표창기준

## 1. 포상 및 표창기준

○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관련부처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수

## 2. 수공기간

○ 정부포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포함)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포함)

## 3.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에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4.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시 받을 수 없음

## 5. 추천제한

###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나.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되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은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각 부처별 장관표창의 경우 해당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세부규정을 따름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은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각 부처별 장관표창의 경우 해당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세부규정을 따름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은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제48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산업통상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을 제외함

### 차. 기 타

○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의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은 추천 제외

○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법인의 대표자와 그 임원은 추천 제외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결격 사유자는 추천을 제한함

## 6. 추천제 운영

○ 포상추천제는 포상대상자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으로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천자는 추천자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관련단체 및 법인의 부서장과 개인 등 모두 가능

## 7. 훈격 결정

○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8. 포상 방법

ㅇ 훈장 및 포장은 개인명의로, 표창은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명의로 표창 시 그 구성원(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표창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ㅇ 다만, 두 사람 이상의 개인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지 않고 협업하여 공적을 쌓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음
('16.7월~,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

## 9. 포상후보자 추천절차

ㅇ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기관인 산업통상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

ㅇ 장관・청장표창은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결정

# Ⅳ. 행정사항

##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공개**(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 대상자는 추천훈격에 해당되는 동의서(붙임서식 3)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방법** : 소통24(구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5일 이상 공개

○ **공개결과의 활용**

-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6)에 즉시 통보

##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은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각 부처 장관 표창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 준수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조서 작성 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공적 내용을** 기재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3.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6. 2. 6(금)**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관 경영지원팀(5층)

○ **제출방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경영지원팀)로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작성한 서식은 날인 후 우편 송부 및 전자우편으로 한글파일양식(hwp) 및 원본 스캔본(pdf파일)을 제출
* 전자우편 : sanghun@kenca.or.kr, 전화 : 02-3019-3222

- 국민추천포상에 따라 일반국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와 전자우편(sanghun114@korea.kr) 통해 제출

## 4.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가. 제출서류

(1) 공적조서(1부 이상) : <붙임서식 1>
(2) 공적요약서(1부) : <붙임서식 2>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1부) : <붙임서식 3>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1부) : <붙임서식 4>
(5) 이력서(1부, 사진부착) : <붙임서식 5>
(6)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붙임서식 6>
**(* 일반국민 공모 추천 해당자에 한해 제출)**

(7) 상기 (1)~(6)를 입력한 파일(HWP 및 직인 날인 후 스캔한 PDF파일)
(8) 포상 후보자 추천 공문
(9) 기재한 공적내용에 대해 입증가능한 증빙자료(별도제출 형식 없음)

## 나.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붙임서식으로 작성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용지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15mm, 위10mm, 아래 13mm, 머리말 16mm, 꼬리말 16mm

### (1) 공적조서(붙임서식 1)

○ 공적조서의 항목 중 공란 위주로 기입하며, 공적분야·추천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 '공적기간'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예시> 15년 5개월인 경우 : 1505, 25년 12개월인 경우 : 2512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작성, 마무리는 "~에 기여함."으로 작성**

-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정확하게 작성할 것

○ '조사자, 추천관'은 포상후보자의 신원, 공적 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 조사자 : 각 업체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이 조사자가 되어 기명날인
- 추천관 : 소속회사(단체)의 대표자가 추천관이 되어 기명날인

* 공적조사자란에 추천기관장 직인날인 요망

○ '주요 경력' 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공적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할 것

- 경력은 공적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

도록 최초 입사 연월일을 포함하여 주요경력 기재

○ ‘과거 포상기록’ 란은 재포상 금지기간 산정에 필요하므로, **장관 표창 이상** 경우에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 기재할 것

<예시> 2004. 10. 18. 국무총리 표창(○)

○ ‘공적 내용’ 은 <별첨>의 심사지표를 참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공적 관련 성과표시는 가급적 **정량화(계량화, 수치화)**하여 표시하되, **도표양식・그림・특수문자・기호 등은 공적내용에 기재 불필요**

- 공적내용은 공적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되, 기재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이어야 함.
- 공적내용은 참여 프로젝트의 단순 나열이나 추상적・미사여구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개조식으로 사실(Fact) 위주로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도 제출

**(2) 공적요약서**(붙임서식 2)

○ ‘성명’ 란에는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을 같이 기입

○ ‘소속기업 현황’ 은 공적심사 시 정량평가지표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기재 요망

○ ‘주요공적 요약’ 란은 작성한 공적내용 중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요약서도 제출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3)

○ 내용을 읽고 정부포상 후보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4)

ㅇ 내용을 읽고 장관표창 후보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

**(5) 이력서**(붙임서식 5)

ㅇ 사진란은 여권용 사진 부착하고, 고화질의 이미지파일 별도로 첨부

ㅇ 학력사항은 최종학력과 직전학력 2개 이상 기재하며, 경력사항은 최초 기업체 경력부터 현 근무지까지 경력 위주로 기재

ㅇ 경력사항 기재 시 연월일까지 기입

ㅇ 추후 경력 확인을 위해 병역사항도 필히 기재

ㅇ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력서도 제출

**(6)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붙임서식 6)

ㅇ 일반국민 공모 포상추천제 양식으로 제3자가 추천 시에 한해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와 함께 본 양식 별도로 제출

ㅇ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자세히 기재

ㅇ 추천인 및 피추천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ㅇ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은 심사 이후 안내에 따라 공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 양식 참조)

ㅇ ‘공적내용’은 공적조서(붙임서식2)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기재

**(7) 기타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등 제출된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함(예 : 성명, 한자, 주민번호, 회사명, 직위, 공적기간 등)

ㅇ 기재한 공적내용에 대해 입증 가능한 별도의 증빙이 있는 경우 제출

ㅇ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 작성단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문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 작성자·조사자·추천관 기명날인 후 한글원본(HWP) 및 기명날인 스캔본(PDF) 두 종류로 송부 요망

<붙임서식>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5. 이력서 양식 1부.
6.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참고자료>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및 표창 심사지표(안). 끝.

<붙임서식 1>

#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 | | | |
|---|---|---|---|
| 성 명 | (한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군번(군인인 경우) | |
| | | 국적(외국인인 경우) | |
| 주 소 | ※ 반드시 신청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 | |
| 직 업 | ※ 회사원 | 소 속 | ※ 회사명 |
| 직 위 | ※ 과장 | 직 급 · 계 급 | ※ 5급 |
| 추천 훈격(勳格) | | 추 천 순 위 | ※ 공 란 |
| 공 적 분 야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 공 적 기 간 | ※ 00년 00월 00일<br>(2026. 2. 6기준) |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70자 이내로 작성하되,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요약 작성

조사자

| | | | |
|---|---|---|---|
| 소 속 | | | |
| 직위(직급·계급)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요 경력 | |
|---|---|
| 년 월 일 | 이력사항 |
| ※ 2000. 1. 1 ~ 2005. 12. 31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과거 포상기록(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년 월 일 | 내용 |
| ※ 2000. 1. 1 | ※ 수여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 |
|---|---|---|
| 제재시작일<br>(제재예정일 포함) | 제재종료일<br>(제재예정일 포함) | 제재사유 |
| | | |
| | | |

공적 내용

**<작성 참고사항>**

- <별첨>의 심사지표를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글꼴형식은 휴먼명조체, 9포인트, 줄간격 150% (양식 유지)
- 공적내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공적내용”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 공적에 대한 성과표시는 구체적인 수량 또는 물량으로 기재
- 도표양식, 그림, 특수문자, 특수기호는 기재불가
- 여러 공적내용 중 자신만이 겪은 일, 가장 차별화되고 창조적인 공적내용 등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식으로 기술

| 공적 내용(2,000자 이상 작성) |
| --- |
| |

# 공적조서(단체용)

(앞쪽)

| | | | |
|---|---|---|---|
| 회 사 명 | | | |
| 법 인 번 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반드시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 | |
| 연 락 처 | ※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 직통번호) | | |
| 대 표 자 성 명 | (한 자) | | |
| 추천 훈격(勳格) | | 추 천 순 위 | ※ 공 란 |
| 공 적 분 야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 공 적 기 간 | ※ 00년 00월 00일<br>(2026. 2. 6기준) |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70자 이내로 작성하되,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함.

※ 공적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 작성

| 조사자 | | | |
|---|---|---|---|
| 소 속 | | | |
| 직위(직급·계급)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요 경력 | |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2000. 1. 1 ~ 2005. 12. 31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과거 포상기록(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수여일(연 월 일) | 내용 |
| ※ 2000. 1. 1 | ※ 수여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 | |
| 공적 내용(2,000자 이상 작성) | |

**<작성 참고사항>**

- <별첨>의 심사지표를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글꼴형식은 휴먼명조체, 9포인트, 줄간격 150% (양식 유지)
- 공적내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공적내용”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 공적에 대한 성과표시는 구체적인 수량 또는 물량으로 기재
- 도표양식, 그림, 특수문자, 특수기호는 기재불가
- 여러 공적내용 중 자신만이 겪은 일, 가장 차별화되고 창조적인 공적내용 등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식으로 기술

| 공적 내용(2,000자 이상 작성) |
| --- |
| |

<붙임서식 2>

# 공 적 요 약 서(개인)

| 인적사항 | | | |
|---|---|---|---|
| 성명(한자) | 홍길동 | 국 적 | 대한민국 |
| 주민등록번호 | 59XXXX - XXXXXXX | 소속 및 직위 | 대한민국(주) 대표이사 |
| 추 천 훈 종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 ), 장관(청장)표창( ) | | |
| | ※ 해당 추천훈종에 (●) 표시 | | |
| 연락처 | (직장) | (휴대폰) 010-XXX-XXXX | |
| | (이메일) | | |

| 소속 기업 현황 | | | |
|---|---|---|---|
| 기업구분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표자명 | |
| 회사주소 | 도로명으로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산재보험가입번호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 해당번호 기재 |

| 주요공적 요약 |
|---|
| (양식)<br>ㅇ<br>-<br><br>ㅇ<br>-<br><br><작성 참고사항><br>-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200자 이내로 요약**하되, 심사지표를 참고하여 계량화된 성과 중심으로 작성<br>- 공적조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br>-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

# 공 적 요 약 서(단체)

| 기업정보 | | | |
|---|---|---|---|
| 회 사 명 | | 대표자명(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추 천 훈 종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  ),  장관(청장)표창(  ) | | |
| | ※ 해당 추천훈종에 (●) 표시 | | |
| 연락처(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 기업 현황 | | | |
|---|---|---|---|
| 기업구분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회사주소 | 도로명으로 기재 | | |
| 전체 재직자수<br>(전년도 기준) | | 신규 고용인원<br>(전년도 기준) | |
| 산재보험가입번호 | | 엔지니어링사업자<br>신고번호 | |

| 주요공적 요약(200자 이내) |
|---|
| (양식)<br>o<br>-<br><br>o<br>-<br><br><작성 참고사항><br>-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200자 이내로 요약**하되, 심사지표를 참고하여 계량화된 성과 중심으로 작성<br>- 공적조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br>-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

<붙임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 포상 후보자

| 성　　명 | | | |
|---|---|---|---|
| 소속(주소) | | 직 위(급) |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통상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br>·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br>·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br>※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br>·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br>·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
| 정부포상 관보 게재 |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
|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

**<붙임서식 4>**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 성 명 | | | |
|---|---|---|---|
| 소속(주소) | | 직 위(급) | |

위 본인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위와 같이 2026.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붙임서식 5>

# 이 력 서

## ❑ 이력사항 및 주요 경력사항

| 사 진<br>(파일삽입 사진파일 용량은 300dpi 이상, 350kb이상 용량일 것, **넥타이 한 정장 복장 이면서 정면 사진 부착**) |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한자]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 소<br>(자택주소) | | | | | |
| | | 전 화 | [자택]( )<br>[직장]( ) | 휴대폰 | | E-mail | |

| 학력사항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역사항 | 병 역 |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 | | | |
|---|---|---|---|---|---|---|
| | 군 별 | | 계 급 | | 복무기간 | 년 월 ~ 년 월 |

| 경력사항 | 근무기간<br>(부터 ~ 까지) | 근 무 처 | 근무 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br>(부터 ~ 까지) | 근 무 처 | 근무 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 포상실적

| 연 번 | 수상 연월일 | 수상명 | 수여기관 |
|---|---|---|---|
| | | | |
| | | | |
| | | | |

## ❑ 기타 대외 활동

| 기 간<br>(부터 ~ 까지) | 소 속 | 직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 형벌

| 기 간<br>(부터 ~ 까지) | 종 류 | 비 고 |
|---|---|---|
| | | |
| | | |

※ 징계나 형벌사항은 사내 포함하여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

<붙임서식 6>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일반국민 공모 추천에 한함)

| | | | | |
|---|---|---|---|---|
| **추 천 인** | 성 명*<br>(단체명) | | 관 계* | (피추천인의) |
| | 주 소* | | e-mail | |
| | 전 화* | | 휴대전화* | |
| **피추천인**<br>(포상후보자) | 성 명*<br>(단체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근무처<br>(직업) | |
| | 전 화* | (자 택)<br>(사무실) | 휴대전화* | |
| | 주요경력<br>(기간) | ·<br>·<br>·<br>현 | | (  ~  )<br>(  ~  )<br>(  ~  )<br>(  ~  ) |
| **공적내용*** | | | |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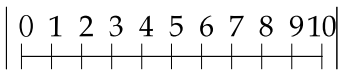
〈참고자료〉

**- 개인용 -**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및 표창 심사지표(안)

## 가. 공통지표(비중 40%)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 지표명 | 지표의 정의 | 가중치 | 측정방법 |
|---|---|---|---|
|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 10 | 심사자의 점수부여<br> |
|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10 | 상 동 |
| 고 객 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10 | 상 동 |
| 창조적 기여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10 | 상 동 |
| 합계 | | 40 | |

## 나. 특성지표(비중 60%)

※ 부처별・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하는 지표

| 지표명 | 지표의 정의 | 가중치 | 측정방법 |
|---|---|---|---|
| 공적기간 |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 수 등) |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br>1등급 : 25년 이상 10점<br>2등급 : 20~25년 미만 9점<br>3등급 : 15~20년 미만 8점<br>4등급 : 10~15년 미만 7점<br>5등급 : 5~10년 미만 6점 |
| 업적도 |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실적.국위선양.기술개발.사회공헌 등) | 20 | 심사자의 점수부여<br>0 2 4 6 8 10 12 14 16 18 20 |
| 기여도 |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일자리창출, 제도개선, 특허, 관련 행사 참여 등) | 10 | 심사자의 점수부여<br>0 1 2 3 4 5 6 7 8 9 10 |
| 평판 및 인지도 | 엔지니어링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활동, 관련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 | 10 | 상 동 |
| 기 타 | 상기 평가지표 외에 기타 특별히 고려 할 사항 (난이도, 창조도 등) | 10 | 상 동 |
| 합 계 | | 60 | |

## - 단체용 -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및 표창 심사지표(안)

### 가. 공통지표(비중 40%)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 지표명 | 지표의 정의 | 가중치 | 측정방법 |
|---|---|---|---|
|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 10 | 심사자의 점수부여<br>0 1 2 3 4 5 6 7 8 9 10 |
|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10 | 상 동 |
| 고 객 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10 | 상 동 |
| 창조적 기여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10 | 상 동 |
| 합계 | | 40 | |

## 나. 특성지표(비중 60%)

※ 부처별・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하는 지표

<table>
<tr><th>지표명</th><th>지표의 정의</th><th>가중치</th><th>측정방법</th></tr>
<tr><td>공적기간</td><td>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 수 등)</td><td>10</td><td>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br>1등급 : 25년 이상 10점<br>2등급 : 20~25년 미만 9점<br>3등급 : 15~20년 미만 8점<br>4등급 : 10~15년 미만 7점<br>5등급 : 5~10년 미만 6점</td></tr>
<tr><td>업적도</td><td>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실적.국위선양.기술개발.사회공헌 등)</td><td>20</td><td>산업계는 실적수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table>
<tr><th rowspan="2">등 급</th><th colspan="3">연 수주 규모</th><th rowspan="2">배점</th></tr>
<tr><th>대기업</th><th>중견기업</th><th>중소기업</th></tr>
<tr><td>1등급</td><td>1,000억원 이상</td><td>600억원 이상</td><td>50억원 이상</td><td>20점</td></tr>
<tr><td>2등급</td><td>800억원 이상</td><td>400억원 이상</td><td>30억원 이상</td><td>18점</td></tr>
<tr><td>3등급</td><td>600억원 이상</td><td>200억원 이상</td><td>10억원 이상</td><td>16점</td></tr>
<tr><td>4등급</td><td>400억원 이상</td><td>100억원 이상</td><td>5억원 이상</td><td>14점</td></tr>
<tr><td>5등급</td><td>400억원 미만</td><td>100억원 미만</td><td>5억원 미만</td><td>12점</td></tr>
</table>
다만, 학계 등 비산업계는 (엔)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강연, 인터뷰, 위원회 활동, 기타 제도개선 제안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기의 배점기준 준용</td></tr>
<tr><td>일자리 창출 기여도</td><td>인력고용 및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한 정도</td><td>10</td><td>고용인원증가율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table>
<tr><td>비율(%)</td><td>1% 미만</td><td>1~2% 미만</td><td>2~3% 미만</td><td>3% 이상</td></tr>
<tr><td>점수</td><td>4</td><td>6</td><td>8</td><td>10</td></tr>
</table>
* 고용인원증가율 : 전년도 신규 고용인원 / 전년도 재직자수</td></tr>
<tr><td>산업 기여도</td><td>엔지니어링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제도개선, 특허, 관련 행사 참여 등)</td><td>10</td><td>심사자의 점수부여<br>0 1 2 3 4 5 6 7 8 9 10</td></tr>
<tr><td>평판 및 인지도</td><td>엔지니어링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활동, 관련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td><td>10</td><td>상 동</td></tr>
<tr><td>합 계</td><td></td><td>60</td><td></td></tr>
</table>